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

금 융 감 독 원

우150-743 /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/ 전화 02-3145-7286 / 전송 02-3145-7286 처리부서 보험영업검사실 검사3팀 팀장 홍장희 담당자 수석검사역 김홍건

문서번호 보영검삼 -00006

시행일자 2014.01.08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사본수신

제 목 손해사정업무 위탁관련 시정요구

1. 우리 원은 손해사정법인과 보험회사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하고, 손해 사정법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'13.12월 손해사정법인 중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업(業)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非자회사 38개사를 선정하여 「손해사정법인의 업무에 대한 실태점검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.

2. 동 실태점검 결과, 일부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손해사정업무 위탁범위 외의 업무를 강요하거나 수수료 미지급(지연지급)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다음과 같이확인되어 시정을 요구하니 개선하기 바라며, 향후 손해사정법인 및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검사시 미진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.

- 다 음 -

가. 합의서 징구 등 손해사정 위탁업무 범위 외 부당 요구행위 상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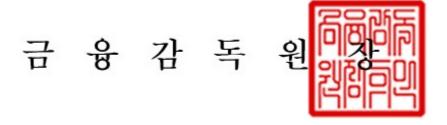
- □ (실태)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업법에서 정한 손해사정업무 범위 내 위탁 업무만을 수행하여야 함에도, 보험회사가 합의서(삭감지급,계약해지 조건부 지급 등)를 징구토록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만연
 - * '13.8.29. 우리원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위탁범위를 벗어나 합의서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 손해사정업무 담당직원에 대해 조치한 바 있음
- (개선) 보험업법 제188조에서 정한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범위 내에 한해 위탁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

나.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수수료 지급기준 불합리

- □ (실태)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 계약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, 보험 회사가 손해율 관리 목적으로 제지급금액을 절감하는 경우 기본수수료 이외에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불합리한 수수료 지급기준 사용
- (개선) 손해사정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수수료지급 기준 정비할 것(보험사기 관련 조사 차등지급은 제외)

다. 손해사정수수료의 장기 미지급 행위 만연

- □ (실태) 보험회사의 위탁결정에 의해 손사법인의 매출이 영향을 받음에 따라 위탁해지 불이익을 우려하여 미지급수수료에 대한 적극적인 청구가 어려운 현실
 - * 실태점검 대상 38개사의 미수금은 16억원(보험회사 중 최고 : 3.6억원)규모로 집계되었으나 더 많은 규모의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
 - (개선) 보험회사별로 기한 초과한 미지급수수료('13.12월말기준, 손해사정 보고서가 제출된 전건)를 1.24.까지 지급하고, 지출결의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.27.까지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



수 신 처 차(1-20, 23-27, 29-32, 37, 56, 58-61)